

의안번호	제576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5월 29일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6
----------	-----

발의연월일 : 2024년 5월 29일
발의자 : 김종필, 이동우, 김호경,
박지현,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1. 제안이유

무단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추진 시 충북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5조)
- 무단방치되었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안전교육·운영 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교통철도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본인”을 “충청북도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본인과 동승자”로, “하고”를 “하고,”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이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이용환경 조성”을 “이용 환경 조성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이동장치 이용안전문화”

를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로, “민관협력”을 “민관협력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마련”을 “마련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충청북도민, 관련 기관 및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용자 등 충청북도민, 관련 기관 및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를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무단방치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무단방치되었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3.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5. 건물, 상가, 빌딩 등에 진·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

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7.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8.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10.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11.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 시설
12.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13.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14.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거치하는 경우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곳

제7조의3(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협력체계 구축 등)”을“(협력체계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를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으로,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개인형 이동장치”이란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저속의 이동 보조기구를 말한다.</u></p>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u></p>
<p>제3조(책무) ① (생략)</p> <p>② <u>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충청북도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본인과 동승자-----하고, -----</u> ----- ----- -----.</p>
<p>제4조(<u>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u>) ①·② (생략)</p> <p><u><신 설></u></p>	<p>제4조(<u>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u>)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u></p>
<p>제5조(<u>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u>) 도지사는 개인형 이</p>	<p>제5조(<u>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u>) ① -----</p>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무단방치되었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3.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5. 건물, 상가, 빌딩 등에 진·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
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7.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8.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
시설 5미터 이내 구역

10.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
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11.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
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 시
설

12.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13.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
제한 구간

14.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형 이
동장치를 거치하는 경우 통행
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하는 곳

<신 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

제7조의3(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교
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
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
-----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
용 환경 조성을 -----

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시·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구축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8의3. (생략)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 33. (생략)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